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02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김성원
김예지 · 구자근 · 최보운
김위상 · 정동만 · 김승수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8호라목,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라목 중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을 “자동차 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및 자동차사고”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 및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재활시설”을 “응급의료·재활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재활시설운영자”를 각각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과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한다.

제23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제30조제2항 중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을 “해결하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며, 중증 후유장애인”

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후유장애인”을 “자동차사고 부상자 응급 의료 제공 및 후유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시설”을 “응급의료·재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시설”을 “응급의료·재활시설”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과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응급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응급 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응급의료·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재활시설운영자”를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재활시설”을 “응급의료시설, 의료재활시설”로,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받고 재활”을 “받고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과목 및 재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

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시설운영자”를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활시설 운영자”를 각각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활시설 운영자”를 각각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재활시설운영자”를 각각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시설운영자”를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한다.

제39조의12제2항제6호 중 “재활시설”을 “응급의료·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재활시설”을 “응급의료·재활시설”로, “재활사업”을 “응급의료·재활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활시설”을 “응급의료·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시설운영자”를 “응급의료·재활

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재활시설”을 “응급의료·재활시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재활시설운영자”를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8.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u> : 제31조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u>	라. <u>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u> ----- ----- <u>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및 자동차사고</u>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②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
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
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
에 관한 사항

나.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
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 4. (생략)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

-----.

1. -----응급의
료·재활시설의 설치 및 응급
의료·재활사업-----

가. 응급의료·재활시설-----

나. 응급의료·재활사업-----

다.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
자-----

라.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
자-----

마. -----응급의료·재활
시설과 응급의료·재활사
업-----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원회에서 심의 · 의결 또는 조정
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또는
조정 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3. (생략)

③ ~ ⑤ (생략)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생략)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
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
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
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
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
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

-----.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 · 재활시설운영심의
분과위원회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결하고 자동차의 운행으
로 인한 부상자에 대하여 응급
의료를 제공하며, 중증 후유장
애인-----.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동차사고 부상자 응급
의료 제공 및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략)
- ② (생략)
-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과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응급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응급 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응급의료·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응급의료·재활사업-----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응급의료·재활시설-----

-----.
- ④ -----응급의료·재활시설-----

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

제32조(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

-----응급의료
· 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

1. 응급의료시설, 의료재활시설
-----응급의료
· 재활사업-----
-----받고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과목 및 재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
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
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
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
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
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
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
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

응급의료·재활사업-----

-----.

④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

-----.

제33조(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
자의 지정 취소) ① -----응
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

-----.
-----.

1. ~ 4. (현행과 같음)

5. -----
-----응급의료·재활시설이
나 응급의료·재활사업-----

② -----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
자-----

-----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

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u>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u>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u>재활시설운영자</u>로 본다.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u>재활시설운영자</u>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u>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u>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u>재활시설운영자</u>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5. (생략)	----- -----<u>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u>----- -----. -----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1.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 2. -----<u>응급의료·재활시설이나 응급의료·재활사업</u>----- ----- ③ ----- ----- ----- ----- ----- -----<u>응급의료·재활시설운영자</u>-----.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	---

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u>재활시설</u>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4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지 아니한 <u>재활시설운영자</u> 3의2. 4. (생략) ③ · ④ (생략)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응급의료 · 재활시설</u>-----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응급의료 · 재활시설운영자</u> 3의2.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